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CISG 34조와 35조를 중심으로



2017年 2月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조 요 셴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연구 : CISG 34조와 35조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철 수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年 2月

부경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조 요 셉

조요셉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年 2月



위 원 장 박사 하 명 신 (인)

위 원 박사 이 정 윤 (인)

위 원 박사 김 철 수 (인)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3 절 선행연구	4
1. 본질적 계약위반	5
2. 물품의 물적 적합성	6
3. 서류교부의무	7
제 2 장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의무	9
제 1 절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	9
1.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	10
2.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	11
3.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효과	15
제 2 절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	18
1. 물품의 물적 적합성	18
2. 서류교부의무	20
제 3 장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의무 사례	24
제 1 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24
1.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27
2. 특별한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35
3. 견본과 일치해야 하는 경우	38
4. 용기 및 포장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39

제 2 절 서류교부의무와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41
1. 종속계약에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43
2.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46
3.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교부의무	48
 제 4 장 유형별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 분석	50
제 1 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50
1. 통상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1
2. 특별한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3
3. 견본매매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5
4. 용기 및 포장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57
제 2 절 서류교부의무와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58
1.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59
2.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60
 제 5 장 결 론	62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62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65
 <참고문헌>	67

< 표 목 차 >

<표1> CISG 제35조 2항 (a), (b), (c), (d)호 사례	24
<표2> CISG 제34조 사례	25
<표3> 통상사용목적 사례	51
<표4> 특별사용목적 사례	53
<표5> 견본매매 사례	55
<표6> 용기 및 포장의 사례	57
<표7> 보완이 가능한 서류의 사례	59
<표8> 물품의 사용과 인도에 관련한 서류사례	60

**A Study on the seller's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Focused on Provision of 34 and 35 in CISG-**

Jo, yo-seb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Logistics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CISG,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hich is stipulated in Article 25, is the most important regulation in that it is the standard of remedy. However, the criterion about 'substantial loss' which is a requiremen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bstract, which has been abruptly abstracted and has become a problem for the victim's remedy. Meanwhile, seller's major duty in the CISG must deliver a buyer product agreed with contract and documents must be issued if necessary. The most inconsistency among them is the CISG Article 35 physical suitability, and Article 35 distinguishes between cases where the specification of the goods is explicitly specified and those which are not explicitly defined. Most of the disputes arise out of disputes when the specification is not explicitly specified, so it is necessary to judge the criter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order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the CISG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In addition, since the documents are frequently used as means for linking with the goods, hand over documents duty in Article 34 of the CISG must be additionally determined.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CISG in Article 35 (2) (a)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resale in the buyer's country, (b) an expression of the buyer's intentions to use for particular purpose, (c) consistency of secondary quality, and (d) product standard of packing to protect, Article 34 of the CISG determines that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use and delivery of the goods are the basis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judicial of standard by adding recent case and domestic case to Article 35 (2) (a), (b) already studied in previous studies and (c), (d), and Article 34, which were not made in the previous studies, could be used to provide assistance to the parties in future disputes in that they conducted the case analysis in relation to Article 35.

keyword : CISG,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Substantial loss, Article 34 and 35 of the CISG, Physical suitability, Documen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물품매매거래는 물품이 이동이 격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른 나라의 매매당사자와 계약을 통해서 물품이 이동하고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준거법 선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상기의 이유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통일법으로 제정 및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 Commiss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이하 CISG)¹⁾이다.

CISG은 각국의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국가의 법적 조화를 도모하여, 서로 다른 법제 간 차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이에 따른 당사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그 기본취지가 있다.

CISG에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당사자는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요구 등의 구제수단을 통해서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지만,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CISG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²⁾의 개념은 구제수단의 기준측면에서

1) CISG 체결국 수는 2016년 10월 31일 현재 85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주요 체결국은 영국을 제외한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 무역국가가 가입되어 있다.

2)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상으로는 ‘fundamental’의 용어해석을 ‘본질적인’이라는 형용사로 해설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CISG 규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 계약위반을 규정하고 있는 CISG 제25조에서는 그 ‘본질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판단기준의 부재는 피해당사자가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어렵게 하여 계약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제가 되고 있다.

CISG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본질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반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거나 계약해제를 통한 계약종료 등 구제수단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정할 수 있게 하고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여 상호합의 등의 분쟁해결을 유도하여 당사자들 간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에 대한 판단기준의 연구의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이 격지 간에 이동하는 거래로서 국내거래와 다르게 물품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는데, 물품과 관련하여 계약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물품의 CISG 제35조의 물적 적합성이다.³⁾

UNCITRAL에서 제공하는 CLOUT 분쟁사례에서도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관련한 사례는 163개로서 물품인도관련 34개의 사례, 물품인도 시기 관련 10개의 사례의 비교에서도 가장 많은 계약위반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물적 적합성의 계약위반은 계약에서 물품의 명세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이 제시된다면 당사자들 간 분쟁해결 해소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물품적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를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통일한다.

3) 한재필, CISG적용 국제물품매매에서 국내 강행법분쟁에 관한 연구: 물품불일치 분쟁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19(1), 2009.3, p.150.

합성과 관련하여 권리를 이전하게 하고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부수하여 발생하는 CISG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 역시 물품과 관련한 과정의 일부로서 현대무역에서 다툼이 증가하고 있음으로 상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의 명세를 명시적으로 정한 CISG 제35조 1항보다는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인 제35조 2항과 관련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CISG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와 연계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다수의 국가의 판례와 다양한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제시를 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례 및 사례 분석을 통해서 CISG 제35조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CISG 제35조와 제34조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도출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구제권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CISG를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예측가능성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장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서론에서는 본 연구 배경,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목적을 제시 하였다.

제2장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의무’에서는 CISG 제25조에서 정하

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과 요건을 검토하고 매도인의 의무 중 CISG 제35조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제34조의 그와 관련된 서류교부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품이 불일치하여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러한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는 사례들을 CISG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1항과 2항의 (a), (b), (c), (d)호를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위반 사례를 3가지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4장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에서는 법원들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CISG 제35조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정하기 위해 법 이론과 판례법을 중심으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ISG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제공하는 CLOUT (Case Law on UNCITRAL Text)와 이탈리아의 비교법 및 외국법연구센터(Centr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Law studies)의 판례를 주로 참고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본 논문은 먼저 매도인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 인도 의무 및 그와 관련된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을 위해 CISG 제25조 ‘본질적 계약위반’, 제34조 ‘서류교부의무’와 제35조 ‘물품의 물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관련된 국내 및 해외 문헌을 위주로 분석하였다.

1. 본질적 계약위반

고승만(2015)⁴⁾은 연구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들의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어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기존연구방법들과 다르게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접근하여 결론적으로 기존 접근방법들을 더 제고하되 더 일관된 통일개념으로 교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화(2013)⁵⁾는 연구에서 본질적 계약위반 어떻게 해석하고 확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은 고정적 개념이 아닌 일종의 유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동 개념은 계약당사자들의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계약당사자들의 이익관계의 점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봉수(2014)⁶⁾는 연구에서 물품의 부적합의 판단기준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근거한 주관적 기준이 우선하여야 하고 보충적으로 객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부적합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석광현(2006)⁷⁾은 연구에서 CISG 제25조가 정의하는 본질적 계약위반과 관련한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본질적 계약위반이 CISG의 전

4) 고승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중대한 계약위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 김화,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4, 2013, pp.561-603 (43 pages).

6) 김봉수,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동아법학(62), 2014, pp. 433-459 (27 pages).

7)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3권 2호, pp.437-479.

반을 관통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법적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포괄적으로 사례를 들어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이 추상적임으로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2. 물품의 물적 적합성

이승엽(2015)⁸⁾은 연구에서 물품이 목적적합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고 매수인의 국가에서 물품과 관련하여 강행법규가 있는 경우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강현(2007)⁹⁾, (2012)¹⁰⁾, (2016)¹¹⁾은 계약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인 실질적 손해와 예견가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임을 들어 사례를 여러 사례를 통해 CISG 제25조 판단기준의 공백을 보충 하였으며, 매도인의 물품적합인도 의무와 관련된 판례와 사례중심으로 설명함으로서 실무적으로 본 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곽민희(2012)¹²⁾는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물적 적합성에 대한 계약위반을 판단하고 계약에서 물적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 CISG에 정하고 있는 규정을 본질적 계약위반과 연계하여 판례와 사례를 들어 언급하였다.

8) 이승엽, CISG상 매매목적물의 목적적합성(Fitness for Purpose)에 관한 연구-외국판례 및 중재판정례를 중심으로-, 國際去來法研究 第24輯 第1號, 2015

9)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CISG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2권 2호. 2007, pp.399-420

10) 하강현,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21권 1호, 2012, pp.79-101

11) 하강현, 우리나라 기업의 CISG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貿易商務研究, Vol.69, 2016

12) 곽민희, CISG에 있어서 물품의 부적합과 계약해제 -CISG-AC Opinion no.5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1권1호, pp.103-132

3. 서류교부의무

허해관(2008)¹³⁾, 김상만(2011)¹⁴⁾, 박남규(2013)¹⁵⁾은 국제물품매매계약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를 Incoterms 2010와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그 의무들을 고찰하였고 매매거래에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 교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인도의무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CISG와 Incoterms 2010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허은숙(2010)¹⁶⁾, (2011)¹⁷⁾은 CISG계약하의 물품매매계약에서 서류교부의무와 그 의무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인 경우와 그 기준을 거래형태별로 언급하였다. 개념 및 다양한 서류의무위반과 관련된 다양한 계약위반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연구에서는 인용된 판례와 사례가 없이 법리분석을 실시하였다.

CISG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 제35조의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상기의 선행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들을 통해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CISG 제35조 1항과 2항 (a), (b)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

13) 허해관, 해상송부매매에서 국제매매협약상 매도인의 서류적합의무에 관한 일고찰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37권 0호. 2008, pp.61-85

14) 김상만,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 매매거래에서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通商法律(International Trade Law), 2011, pp.127-160

15) 박남규(2013), 국제물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0권 0호. 2013 pp.3-26

16)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2011권 1호, 2011, pp.153-161

17) 허은숙,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 통상정보연구, Vol.13 No.3, 2011

어졌으나 각각의 쟁점에 대한 세세한 분석 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법리 분석이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c), (d)호와 관련하여 사례 분석을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또한 현대무역에서 물품과 관련해 서류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CISG 제34조의 서류와 관련한 사례연구를 CISG 제35조와 연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계약위반 유형별 분석하여 CISG 제35조 2항 (a), (b)호와 관련된 부분은 국내사례와 최신사례들로 보충 및 추가하여 그 기준을 확인하고 (c), (d)호와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례연구가 되지 않거나 미비하므로 해당 조항의 본질적 계약위반 판단기준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도인의 의무

제 1 절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당사자간에 부여된 의무 불이행은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행위 설명된다.¹⁸⁾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판단은 그 유형 교과에 관한 법리구성상 국제사법 또는 법계 간 일정한 시각차가 존재하게 되며, 이는 대륙법계의 계약불이행과 영미법계의 계약위반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서로 상이한 법체계는 당사자 일방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계약해제 사유 발생 하는 경우 해제요건과 구제방법도 달리한다. 대륙법계에서는 계약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불완전이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해제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¹⁹⁾

대륙법계에서는 계약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면 ‘최고’ 라는 이행을 위한 절차를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위반내용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며²⁰⁾, 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계약의 현실적 이행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영미법계는 이들을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률사실로 포괄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구제로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불이행의 결과가 중대한지 여

18) 심종석, 서민교,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G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3(5), 2008.11, p.254.

19) 김영두, 영미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2004, p.130.

20) 고승만, 전제논문, p.9.

부에 따라 계약해제를 인정 하고 있다. 즉, 금전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현실적 강제이행을 인정한다. 그런데 국제물품 매매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물품매매의 이동이 격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계약 당사자일방의 계약위반으로 분쟁발생시 각국의 각기 다른 법제는 이러한 분쟁에 어느 법제를 적용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는 적용되는 법이 국제사법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상이한 국내법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매매당사자들에게 법적용의 예견가능성과 법적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상이함을 해소하고자 CISG의 제정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CISG는 계약법에 있어 통일법이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리에서 타협점이 될 수 있는 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있어서 대륙법계에 속한 우리나라 법체계의²¹⁾ 시각에서는 생소한 개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CISG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이다.²²⁾

1.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

CISG는 1978년 완성되어 1980년에 UN총회에서 채용되어 1988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CISG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그 역사가 짧다. CISG는 전신인 1939년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Convention relating to a 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21) 윤광운, 무역계약론, p.57. : 우리나라 민·상법의 체계는 대륙법계를 계수하여 제정한 성문법에 속하는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법계의 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관한 우리민법은 일본·독일혼합계수형이라 할 수 있다

22) 김화, 전게논문, p.563.

of Goods : 이하 ULIS)에 관한 협약으로 제정이 시작되었으며, 초안이 작성될 당시 법안자들이 취한 입장은 오늘날의 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취지와 거리가 멀었다.²³⁾

오늘날 본질적 계약위반은 1956년 ULIS 초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처음 생성된 개념으로서 계약위반의 개념이 계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어느 의무의 어느 위반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서 의무의 내용에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위반이 본질적이기만 하면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다.²⁴⁾ 즉, 당사자 일방의 위반사실은 모두 계약위반으로 간주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본질적이거나 비본질적 계약위반으로 구분 한다. 여기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은 미국 계약법의 ‘중대한 계약위반’(material breach of contract)과 영국계약법상 ‘본질적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fundamental breach)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CISG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은 협약상의 독자적인 개념이므로 독자적이고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²⁶⁾

2.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

CISG 제25조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법한 계약위반은 그것이 그 계약

23) 이제우,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법학, Vol.77, 2015, p.178. : ULIS 1939년 초안에서 취한 입장은 오늘날의 본질적 계약위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초안에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러한 약속(undertaking)이 없는 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될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핵심(essential) 계약조항을 이룬다’라고 하여 계약 조항 자체의 성질을 중시하는 입장에 기초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무엇이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는지만 논의할 뿐 계약위반의 성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24) 이제우, 상계논문, p.178.

25) 석광현, 전계논문, p.7.

26)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해설, 법무부(2005), pp.64-65.

하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정도의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중대하다” 라고 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구성요건으로 ‘계약위반사실’(breach of contract), ‘실질적 박탈’(substantial deprive), ‘손실’(detriment)과 ‘예견가능’(foreseeability)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로지 개별 계약조건에 의해야 할 것이며²⁷⁾, CISG에서는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입은 당사자의 손실정도와 계약위반의 주관적 인식의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1)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 사실

계약이라 함은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복수 당사자 간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⁸⁾ 즉,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진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매매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당사자들 간에 체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약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는 사실 자체가 존재해야 하며, 여기서 계약위반이란 CISG의 매매계약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포함한다.

CISG에서 의미하는 계약위반은 모든 종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뜻하며, 당사자들의 의무가 주된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²⁹⁾, 부수적 의무도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도 있다.³⁰⁾ 이는

27) 심종석, 서민교, 전계논문, p.255.

28) 양영환, 오원석, 박광서, 무역상무2판, p.3.

29) 최홍섭, 전계논문, p.65.

CISG가 매매 당사자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계약뿐만 아니라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종류의 의무에 대한 위반을 포괄함을 의미한다.³¹⁾

CISG가 모든 위반사실을 계약위반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CISG는 우리민법의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그 책임을 부담하는 과실책임주의 원칙(Fault principle)과는 다르게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는 영미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CISG는 위반당사자의 통제를 벗어난 이유로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 제79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규정을 두어 이를 제한하고 있다.³²⁾

(2) 기대이익의 상실과 실질적인 손실

① 기대이익의 상실

매매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들의 계약체결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 위함 이므로, 계약위반의 본질성은 ‘계약일방의 계약적 기대의 상실’에 중점을 두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³³⁾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일방이 기대 할 수 있는 바의 박탈, 즉 계약위반자체의 사실로 인해 피해당사자의 기대이익의 상실이 존재해야 되며, 그 크기에 따라서 계약위반이 ‘본질성’을 가진다. 그러나 계약위반의 ‘본질성’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익의 기준을 미리 정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고³⁴⁾ 또한 계약이라

30) 최홍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우리법의 비교적 검토, 比較私法, Vol.11 No.3, 2004, p.12.

31) 김화, 전제논문, p.564.

32) 석광현, 전제논문, p.9.

33) 김화, 상제논문, pp.572-573.

34) 고승만, 전제논문, p.73.

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CISG 제25조의 “기대할 수 있는 바”의 조건은 당사자일반의 주관적인 사정이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기대이익에 대한 기준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② 실질적인 손실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상기에 서 언급한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대이익의 박탈을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주어야 한다.³⁵⁾ 여기서 손실(detriment)의 개념은 금전상의 손해나 또는 결과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³⁶⁾ 손실은 제74조의 손해(loss) 같지 않으며 손해의 개념은 보다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한다.³⁷⁾ 그러므로 손실의 개념은 손해보다 더 넓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손실의 본질성은 사실관계에서 측정되기보다는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실질적인 손실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실질적인지의 판단기준은 오히려 객관화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손실이 실질적인지의 결정은 각 경우 계약상황, 당사자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예견가능성의 존재

본질적 계약위반은 CISG 제25조의 위반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당

35) 최홍섭, 전제논문, p.65.

36) 하강현, 전제논문, p.401.

37) 최홍섭, 상제논문, p.64

해 매매계약에서 피해 당사자가 실질적인 손해는 입었더라도 하더라도 위 반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Foreseeability)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자도 동일한 사정 하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더라면”³⁸⁾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 계약으로 발생하는 기대의 중요성은 우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에 CISG는 제3자의 주관적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즉, “계약위반의 결과를 예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관적 기준과, “그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결과를 예견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³⁹⁾ 이 경우 ‘동일한 종류의 합리적인 자’란 동일한 거래상황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이어야 할 것이고 전문성 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효과

CISG에서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CISG 제30조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인도, 이와 관련된 서류교부의무와 소유권이 전이다. 따라서 만일 매도인이 이러한 기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⁴⁰⁾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행사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특정 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으로 열거 할 수 있으며,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해제권과 대체품청구

38) CISG 제25조

39) 석광현, 전제논문, p.11.

40) 이천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CISG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2010.12, p.793.

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즉, 이러한 구제의 인정여부는 매도인의 의무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되느냐 비본질적계약위반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⁴¹⁾

(1)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계약당사자들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당사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에 피해당사자는 CISG에 근거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구제수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 계약해제이다.

CISG에서는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실질적으로 손실을 피해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게 되고 그 효과로서 CISG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계약해제를 행사할 수 있다.

계약해제를 함으로서 발생하는 계약해제의 효과는 CISG 제81조부터 84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CISG 제47조에 의하여 설정한 추가이행기간을 넘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나, 추가이행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한다고 표시한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⁴²⁾ 다만, 이러한 계약해제는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CISG 제26조에⁴³⁾ 의해 해제를 통지함으로서 그 구제를 행사할 수 있다.

41)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계약책임체계의 특성과 계약위반의 효과: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을 중심으로, Vol.23 No.3 [200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p.188,

42) CISG 제49조 1항-b

43) CISG 제26조

이러한 통지는 매수인의 의사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하는데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만을 통지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물품의 인도 또는 반환에 대한 독촉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효과가 부인된다.⁴⁴⁾ 이러한 이유는 계약해제는 최종적인 구제수단이므로 다른 의사표기와 달리 그 의미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이다.⁴⁵⁾

(2) 대체품인도 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체물품인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⁴⁶⁾ 본 구제권 행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며 둘째, 물품의 부적합이 통지와 함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위반이 본질성의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물품의 하자가 그리 크지 않을 경우 새로운 인도를 강요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고 또한 하자가 크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대체물품 인도를 강요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에게 대체품을 인도함에 따른 비용이 매수인의 손실보다 큰 경우 계약의 계속이 불투명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가 격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거래에서는 시간적, 공간적의 이유로 이러한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그리 성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차라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다른 곳에서 물품을 주문하는 것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⁴⁷⁾

44) 심종석, 전게서, p.424.

45) 최홍섭, 전게논문, p.67.

46) CISG 제46조 2항

47) 홍석모,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에 관한 UN협약해설 및 사례연구, p.113

제 2 절 CISG에서 매도인의 의무

매매계약의 핵심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이행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상법은 매도인의 의무로 소유권 이전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CISG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를 확장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물품의 소유권이전, 물품인도, 이와 관련된 서류를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의무들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CISG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매도인의 주 의무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매도인의 1차적인 의무일 것이나 상기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실무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계약불일치가 발생하는 부분이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운송 및 물적 적합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부의무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1. 물품의 물적 적합성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주요 의무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부수되는 서류를 인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함축할 수 있다. 그 중에도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 매수인이나 대리인에게 인도하는 것이 선결적으로 행해지는 매도인의 의무일 것이나, 계약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가장 많이 계약불일치를 범하는 것이 물품의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간주되며, CISG 제35조에 서는 명세를 명시적으로 정한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하고 있다.

(1) 계약상 물품의 명세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CISG 제35조 1항에서는 물적 적합성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과 체결한 계약에서 매수인으로 부터 요구되는 물품의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물품을 안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포장하여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⁴⁸⁾ 즉, 물품 적합성은 계약에서 매 당사자들이 정한 물품의 품질을 등을 그대로 이행하여 인도한다면 품질 적합성을 이행한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품질과 종류의 물품을 인도하는 것도 모두 계약에 부적합한 것이며,⁴⁹⁾ 물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인도 또한 부적합에 해당할 수도 있다.

(2) 계약상 물품의 명세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장기적으로 거래를 해왔거나 당사자들이 물품의 종류와 수량만 정하여 주문을 하는 경우와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품질과 관련해 묵시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계약에서도 그 내용의 일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⁵⁰⁾ 물품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기준으로서 CISG 제35조 2항에서는 당사자 물품명세과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물품의 품질, 용도 등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매도인은 물품인 인도하는데 있어서 물품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하며,⁵¹⁾ 물품이 계약 체

48) CISG 제35조 1항

49) 최홍섭, 전제논문, p.89.

50) 심종석, 전제서, p.289.

51) CISG 제35조 2항-(a)

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⁵²⁾ 또한 물품의 견본이 제공된 경우, 매수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⁵³⁾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되어야 한다.⁵⁴⁾

2. 서류교부의무

과거에 선박으로 구성된 ‘모험상인’(merchant adventures)의 무역은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조건이자 현실적 인도였다면, 현대 국제무역에서는 운송수단의 발전으로 운송에서는 항공, 해상과 육로 등을 유기적으로 복합하여 운송하고 있다. 또한 통신 및 인터넷 등의 발달은 당사자들이 신용장, 추심, 전매 등의 사용을 용이 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들은 서류로서 거래가 진행되는 상징적 인도성격을 가진다.

그러므로 서류는 매도인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게 하고 매수인이 물품을 처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매매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⁵⁵⁾ 이에 CISG에서는 제34조에서 물품 인도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대원칙을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의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모든 거래는 사실상 서류의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

52) CISG 제35조 2항-(b)

53) CISG 제35조 2항-(c)

54) CISG 제35조 2항-(d)

55) 허은숙, 전게 논문, p.780.

에 매도인의 주요의무인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인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CISG 계약에서 물품을 인도 받기위한 서류를 미인도하거나, 서류의 불일치는 사안에 따라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물품과 관련해서 서류를 교부(Handing over)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물품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이를 교부할 의무를 가지며,⁵⁶⁾ 서류교부의무의 중요도는 체결된 계약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계약 당사자들이 대금결제를 신용장로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매도인은 제반서류를 은행에 제시를 하여야 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교부의무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FOB매매계약 같이 물품과 관련해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면 분쟁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류교부의무는 거래의 형태나, 계약상의 조건 등 제반 조건에 따라 그 의무를 부담하거나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CISG는 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매도인이 대금지급을 받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어떠한 서류들이 교부되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CISG 제58조에서는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이 대금결제를 이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물품의 처분권을 지배하는 서류의 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해석⁵⁷⁾ 있으나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대표적인 유가증권 등이 간주된다.

56) CISG 제34조

57) 박남규, 전제논문, p,14-20. : 좁은 의미의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는 Henry gabriae와 John Honnold는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는 선하증권, 창고수령증 같은 서류들이 유통과 실질적으로 물품의 인도가 가능한 해당서류임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Dietrich Maskow와 Peter Schlechtriem는 범위를 넓혀 매수인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으로 그 서류들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제운송 및 계약의 변화에 맞추어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계약내용에 따라 이러한 서류조건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추가적으로 인도해야할 서류로 간주된다.⁵⁸⁾⁵⁹⁾ 다만, 서류교부의 시기, 장소 등은 일차로 당사자의 합의나 관습, 관행에 의하여 결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을 사용하고 있다.⁶⁰⁾

(2) 매도인의 서류 하자보완권

CISG에서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입은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계약해제 등 다양한 구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계약위반을 하여도 제반 사정을 살펴서 계약관계를 존속, 유지시키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⁶¹⁾

그러한 의미에서 협약에서는 일단 성립된 계약은 가급적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이 이행이 되도록 이행기 전에 매도인에게 서류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서류를 먼저 교부한 경우, 그 서류가 하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 이전까지 서류상의 모든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되며, 인도기일 전 매도인의 서류하자보완은 매도인이 서류를 이미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서류의 부적합함을 알아차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서류하자를 보완하고자

58) 양대천, 조현정, 박성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관한비교연구: -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경영경제 제48집 제1호, 2015.5, pp.5-6

59) 기타조건의 서류가 미교부 사실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대금지급 거부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등이 있다 (CLOUT case No. 216)

60) 심종석, 전게서, pp.260-261.

61) 도중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관세학회지, Vol.11 No.2, 2010, p.202.

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서류의 부적합에는 당해 서류가 계약내용에 비추어 어긋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상황에 따라 사실의 문제로 귀결된다.⁶²⁾

궁극적으로 매도인의 인도기일 전에 하자를 보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이유는 CISG가 계약을 유지시키고자하는 계약유지의 원칙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매도인의 제의를 거절한다면 비록 매도인에 의한 적합한 서류가 후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⁶³⁾



62) 심종석, 전계서, p.261.

63) 도중권, 상계논문, pp.209-210.

제 3 장 물적 적합성과 서류교부 사례

제1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CISG에서는 제35조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에 대한 명세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CISG 제35조 1항이 적용되어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수인이 요구한 바와 같이 물품의 수량, 품질 및 명세에 일치하고 또한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즉, 매도인은 계약에서 매매당사자들이 정한 물품의 품질 등을 합의한 바와 같이 이행하여 인도한다면 품질적합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물품을 인도하거나 합의한 바와 차이가 있다면 계약위반이 된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명세를 명확히 정해서 CISG 제35조 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그 책임소제가 명확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 간에 물적 적합성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CISG 제35조 2항 적용되며,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a)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할 것, (b) 특정한 목적에 적합할 것, (c) 견본으로 제시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하고 있을 것, (d)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물품의 명세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물품에 대한 계약위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CISG 제35조 2항을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하였고, 총 21개의 사례를 (a), (b), (c), (d)호 별로 사례를 구분하여 분류하였

다. 유형별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기준이 되고 있는 판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에 분석이 되지 않았던 최신판례를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국내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판례의 의의를 고려하여 해당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판례를 확장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제3장의 사례분석에서는 제4장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맥락에서 비슷한 판결이 비슷하여 제3장에서 설명하지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례들은 제4장에서 추가하여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1> CISG 제35조 2항 (a), (b), (c), (d)호 사례

조항	CISG 제35조 2항 사례
CISG 제35조 2항 (a)호 : 통상사용목적의 적합성	① 서울중앙지법 2008. 12. 5. 선고 2007가합19698(확정) ② CLOUT case 720 :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5/10/2002 ③ CLOUT case 204 : France Court of Appeal of Grenoble (Commercial Division), 15/05/1996 ④ CLOUT case 272 : 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 Original in German. Unpublished, 31/03/1998 ⑤ CLOUT case 150 : Cour de cassation, Sacovini v. S.A.R.L. Les Fils de Henri Ramel, 23/01/1996 ⑥ CLOUT case 999 : Denmark: Ad hoc Arbitral Tribunal, 10/11/2000 ⑦ CLOUT case 123 : GERMANY Bundesgerichtshof, 8 March 1995, VIII ZR 159/94, 08/03/1995 ⑧ CLOUT case 418 : U.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Louisiana, 17/05/1999 ⑨ UNILEX,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04/06./004 ⑩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CISG 제35조 2항 (b)호 : 특별사용목적의 적합성	①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226 (b)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Example 35A ② UNILEX, Schmitz-Werke GmbH & Co. v. Rockland Industr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00-1125, USA, 21/06/2002 ③ CLOUT case 734 : Audiencia Provincial de Castellón, sección 3, 21/03/2006 ④ CLOUT case 1256 : 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 22/07/2011 ⑤ CLOUT case 867 : Tribunale di Forlì, Mitias v. Solidea S.r.L, 09/12/2008 ⑥ CLOUT case 905: Tribunal cantonal du canton du Valais, 21/02/2005
CISG 제35조 2항 (c)호 : 건본매매의 적합성	① UNILEX, Oberlandesgericht Graz, 6R194/95, Austria, 09/11/1995 ② UNILEX,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05/2945, Belgium, 14/09/2005 ③ UNILEX, Landgericht Berlin, 52S247/94, Germany, 15/09/1994 ④ UNILEX,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06/12/1995
CISG 제35조 2항 (d)호 : 용기 및 포장의 적합성	①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② UNILEX. Summit Chemicals Pty Ltd v Vetrotex Espana SA,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24/05/2004, ③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1.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1) 통상 사용목적의 적합성

계약당사자들이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명세 등을 명백하게 확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CISG 제35조 2항이 적용된다. 그 중 물품이 거래되는 물품이 매수인의 특별한 사용목적⁶⁴⁾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CISG 제35조 2항(a)호에 따라 물품은 통상 그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데,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는 기준은 그 사안마다 기준을 달리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이다.⁶⁵⁾

이와 관련하여 CISG 제35조를 적용하여 판결한 부성스포츠 사건⁶⁶⁾에 그 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한국매수인(원고)은 스페인매도인(피고)로부터 한국 내에서 'JOMA' 상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는 원고가 추가적으로 피고의 최소구매량을 구매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계약이행을 위해 스포츠제품과 종류를 정하여 구매를 주문하였다. 이에 피고는 건적송장을 발송함으로써 당사자 간에 매매계약을 확정하였다. 그러나 최소구매량을 수령한 원고는 사전에 자신이 요구한 원단 품질에 비해 자신이 수령한 물품의 원단 품질과 차이가 있어 인수를 거부하였고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선언 하였다.

이에 법원은 동 매매계약은 제품의 품질에 관해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종류와 수량 등만을 정했기 때문에 통상사용 목적의 적합성을 정한

64) CISG 35조 2항-b

65) 이승엽, 전제논문, p.95. : 통상 사용목적합의 의미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사용 목적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상적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 한다.

6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國際去來法研究 第 20 輯 第 1 號, 2011, p.89 : 서울중앙지법 2008. 12. 5. 선고 2007가합19698(확정), (사건인용)

협약 제35조 제2항 (a)호가 적용될 수 있고 판단하였다.

쟁점이 된 물품의 품질기준은 원고가 피고에게 처음 보낸 구매주문서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 사이즈 등 개략적인 제품명세만 정해져있었고 명시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품질의 기준을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으로 통상적으로 판매될 제품의 품질기준을 피고가 스스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사용목적에 적합함의 기준과 관련하여 판결에서는 제품에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다른 동일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지 않아 통상의 사용목적에 합치하지 않는다” 라고 하여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스페인피고에 의해 정해진 품질은 충분히 재판매나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물품이 그와 동일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고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본 판결은 통상적으로 사용목적 적합성의 정의와 판단기준을 제시한 국내 판결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해석기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판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덜란드 중재판정부가 내린 Rijn Blend사건⁶⁷⁾에서 품질과 관련한 사안에서 물품이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자세히 판단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 중재 판정부는 매매목적물이 CISG 제35조 2항 (a)호에서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 ㉠ 영국 보통법에 따라, 합리적인 매수인이 문제된 목적물의 품질에 대해 인지하였더라도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지 여부를 보

67) CLOUT case 720 :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5/10/2002

는 기준 (standard of merchantability),

⑥ 대륙법계에 따라, 목적물이 중등품질인지 여부를 보는 기준⁶⁸⁾
(average quality standard),

⑦ 물품이 가격에 적합한 합리적 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보는 합리
적 품질 기준⁶⁹⁾(reasonable quality standard)

제시된 기준들 중 중등품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한 대륙법계를 제외한 영미법계의 기준과 합리적 품질 기준은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판결의 기준과 같은 맥락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수인이 물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다른 제3자가 동일한 상황에서도 향유할 수 있다면 통상적으로 적합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이러한 상기의 기준은 여러 사례에서도 기준이 되고 있는데 물품이 통상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판례들은 많이 있는데, 프랑스 냉장고사건⁷⁰⁾에서 프랑스매수인은 미국 매도인과 매매목적물은 냉장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 받은 후, 15일 뒤에 이유 없이 기계가 작동하지 않지 않은 경우, 독일 왁스사건⁷¹⁾에서 독일 매도인과 오스트리아 매수인이 포도나무관리를 위해 왁스를 거래하였으나 오히려 매매물품으로 인해 나무들이 손상을 입은 경우 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그 물품의 성질으로 부터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바를 상실하게 되면 통상

68) 민법 제375조(종류채권) :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69) 이승엽, 전제논문, p.95. : 합리적 품질기준은 매수인의 정당한 기대(justifiable expectations of the buyer)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CISG 제35조 제2항 b호의 특별 사용목적 기준에 근접해 있다는 견해가 있다.

70) CLOUT case 204 : France Court of Appeal of Grenoble (Commercial Division), 15/05/1996

71) CLOUT case 272 : 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 Original in German. Unpublished, 31/03/1998

사용이 부적합한 것 이고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와인사건⁷²⁾에서는 이탈리아 매도인과 프랑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와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인도받은 와인에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었고 매수인은 프랑스 법원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다. 프랑스법원은 매도인이 “평균중등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본 판례에서는 상기 Rijn Blend사건에서 제시한 대륙 법계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 매매 목적물이 다른 물품을 생산함으로서 그 결과물이 계약당사자가 기대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도 목적적합성의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 덴마크 Pig slat사건⁷³⁾에서는 덴마크의 매도인은 캐나다의 매수인에게 제조용 대형 기계 및 Pig slat주물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기계자체의 기능에 대해서는 품질을 보증하였으나 그 기계가 생산한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서는 매도인이 보증하지 아니하는 조건을 두고 있었다. 제품생산을 시작한 후 생산된 제품은 하급의 품질이었고 매수인은 기계하자로 간주하여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지만 매도인은 매수인이 사용한 원료의 하자로 인해 제품생산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수리를 거절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덴마크 중재 판정부는 전문가의 검증을 통하여 매수인의 지속적인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한 것은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동시에 본질적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수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국제물품 매매계약에서 계약 당사자들, 특히 매수인은 물품구매를 통해서 제조, 생산, 사용 등의 과정을 통해 기대이익을 생산하고자 하였을 것

72) CLOUT case 150 : Cour de cassation, Sacovini v. S.A.R.L. Les Fils de Henri Ramel, 23/01/1996

73) CLOUT case 999 : Denmark: Ad hoc Arbitral Tribunal, 10/11/2000

이다. 만약 매매목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더라면 매수인은 계약에서 구매한 기계로 생산한 물품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음이 분명함으로 그러한 물품의 품질이 문제가 있어 통상 사용에 문제가 있다면 매도인이 판매한 기계는 통상 사용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강행법규 준수 여부에 따른 물적 적합성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을 하는데 지켜야 할 강행법규⁷⁴⁾가 있어 물품의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 국가의 강행법 중 어느 국가의 법규를 기준으로 물품의 부적합성을 판단할 것 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수출국에 상주하는 매도인이 수출을 위한 통상적인 목적적합성에 부합하기 위해서 매수인 국가의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독일의 ‘홍합 사건(New zealand mussels case)’⁷⁵⁾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본 사건의 스위스 매도인(수출업자)와 독일 매수인(수입업자)는 New Zealand산 홍합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인은 홍합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인도한 홍합에 함유된 카드뮴수치는 수출국인 스위스의 허용범위에서 인정되는 범위였지만 수입국인 독일에 서의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 하는 수치였다. 그러자 독일 매수인은 스위스매도인이 부적합한 물품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제를 선언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의 불일치에 대해 독일 국내규정을 임의로

74)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규를 강행법규 또는 강제법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이며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법규이다 (실무 노동용어사전)

75) CLOUT case 123 : GERMANY Bundesgerichtshof, 8 March 1995, VIII ZR 159/94, 08/03/1995

적용하였으며, 품질 불일치 통지 기간을 이미 상당기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해제는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독일 최고법원에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최고법원은 독일보건당국이 공표한 기준은 구속력이 없으며, 카드뮴이 검출되더라도 스위스매도인이 인도한 홍합은 식용이 가능하고 재판매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매도인 승소 판결을 하였다. 또한 독일 최고법원은 CISG가 매도인에게 수입국에서 시행 중인 모든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매도인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다. 다만, 연방대법원은 다음의 예외들을 인정하였다.

- ① 수입지국에도 수출국과 동일한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 ② 매수인이 자국 내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알린 경우
- ③ 매도인이 수입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매수인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에 있었다거나, 수입국에 자주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입국에 광고를 하는 등의 경우

상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국의 규정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수출업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본 사건의 판례는 매도인이 CISG 제35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 국가의 강행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른 많은 사건과 판례에서 참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수출업자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강행법규에 의한 기준은 CISG 제35조에 의한 물품의 일치성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일반원칙으로 인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 대한 독일 최고법원의 판결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⁷⁶⁾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국가에 의해 규

울되는 강행법규 기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기의 판례는 물품의 일치성 여부를 수입국이 아닌 수출국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판결을 하였지만 매도인이 매수인 국가에 특유한 법령을 인식하지 못하여 분쟁에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매수인 또한 그러한 법령이 매수인 국가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법령임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강행법규의 차이에서 오는 위험을 매수인이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것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다.⁷⁷⁾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기 사건⁷⁸⁾에서는 이와 다른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이탈리아 매도인과 미국 매수인이 유방X선 촬영의학기기 매매목적물로 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도인을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1996년 미국의 식약청(FDA)은 그 장비가 미국의 의학기기 제조 규정의 행정조치(administrative procedure)에 불일치의 이유로 미국 FDA가 이를 압류하자, 미국매수인이 이탈리아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본 사건의 쟁점은 수출자인 매도인이 수입국 미국의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와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느 매매계약 당사자가 미국 정부 규정을⁷⁹⁾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가 쟁점이 되었다.

중재 판정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어 매수인은 미국 법원에 중재판정의 확인판정을 청구하였는

76) 한재필, 전게논문, p.153.

77) Harry M. Flechtner,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CISG")",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Spring 2008, p.8.

78) CLOUT case 418 : U.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Louisiana, 17/05/1999

79)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 의약품, 의료기기의 제조·관리의 기준

데, 매도인은 상기의 ‘홍합 사건’⁸⁰⁾ 판례의 예를 들어 CISG는 매도인에게 수입국의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 합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미국 법원은 위 중재판정부가 충분한 검토 끝에 위 독일 판례의 세 번째 예외사유⁸¹⁾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중재판정부가 그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수출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미국의 GMP규정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판례에서는 예외를 적용하여 수출지가 한정적으로 수입지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국 수입국의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경우 어느 법이 적용되는가에 따라 본질적 계약위반기준이 달리 적용될 것이다. 홍합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수입지국에도 수출국과 동일한 법규가 존재하는 경우, ② 매수인이 자국 내 수출을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가 있음을 매도인에게 알린 경우, ③ 예외적으로 수입국의 규정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수출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업자는 거래조건들을 고려해 거래에 임할 것임으로 합당이 수입국 강행법규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라면 강행법규에 따른 물품의 일치성 기준은 수출지 기준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많은 판례에서도 수출업자를 기준으로 물품의 일치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사전에 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모든 각국의 강행법규 기준을 고려하면서 매매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80) CLOUT case 123 : GERMANY Bundesgerichtshof, 8 March 1995, VIII ZR 159/94, 08/03/1995

81) 매도인이 수입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매수인과 오랜 기간 거래 관계에 있었다거나, 수입국에 자주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입국에 광고를 하는 등 예외적으로 수입국의 규정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수출업자에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p.34 참조

2. 특별한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CISG 제35조 2항 (b)호는 매수인이 특별한 목적으로 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인도하는 물품은 그 특별한 목적에 물품이 적합해야함을 것 규정하고 있다.

CISG는 당사자의 계약의도를⁸²⁾ 전제로 계약내용을 해석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특별사용목적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통상사용에 적합해야 하는 (a)호보다 (b)호의 우선하여 적용된다.⁸³⁾

특별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b)호에 의하면 특별한 목적의 판단기준은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특별하게 사용될 것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나타내야하고 ② 매도인에 대한 기술에 신뢰를 했어야 하며 ③ 그러한 매수인의 신뢰는 합리적이어야 할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⁸⁴⁾

특별목적상에 적합해야함을 John O. Honnold는 다음과 같은 예시⁸⁵⁾를 제시하고 있다. 매수인은 드릴제조업자인 매도인에게 탄소합금강관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드릴세트를 매매 목적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드릴제조업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이 특별한 목적에 지정한 드릴세트를 선적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이 선적한 드릴은 일반 강관에 사용하여 구멍을 뚫을 수는 있지만 매수인이 특별히 사용하기위한 탄소합금강관에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이는 드릴은 통상 사용에 적합한 물품일지라고 CISG 제35조 2항 (b)호에 의해 매수인의 특별사용목적에는 부적합한 것이다. 이러한 사

82) CISG 제8조

83) 김화, 전제논문, p.569.

84) CISG 제35조 2항-(b)

85)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226 (b)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Example 35A

실은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미국의 직물사건⁸⁶⁾에서는 직물(fabric)제조업자인 미국매도인과 독일매수인과 Trevira라고 불리는 드레이퍼리(drapery)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협상기간 동안의 사실관계는 매수인은 전사인쇄 프린팅(Transfer printing)에만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직물천을 주문하고자 주문의뢰를 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원하는 조건에 관련하여 직물검사를 한 후 매수인에게 물품이 적절하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매수인은 초도주문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이 전사인쇄 작업을 하는 동안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추가주문에서의 연속된 물량에서 20%가 하급품질의 제품으로 판정되어 매수인은 주문한 물품을 반송처리 하였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부는 CSIG 제35조 2항 (b)호를 적용과 해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하였다.

먼저 계약체결 전 부터 매수인이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특수 작업 사용에 부적절한 물품을 인도하였고 더욱이 매도인은 자신의 계산으로 물품검사를 통하여 물품이 적합함을 매수인에게 설득하고자 하였으므로 매수인입장에서는 매도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매수인의 물품의 반송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물품의 특별한 목적과 관련한 가솔린장치사건⁸⁷⁾에서는 독일의 매도인은 스페인의 매수인과 자동차 가솔린의 소모를 감소시키는 특수한 장치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가솔린감소장치를 인도하였다. 매수인 물품을 인도 받은 후 자동차에 설치하였으나 가솔린의 소모량이 감소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의 부적합을 통지하고 계

86) UNILEX, Schmitz-Werke GmbH & Co. v. Rockland Industr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00-1125, USA, 21/06/2002

87) CLOUT case 734 : Audiencia Provincial de Castellón, sección 3ª, 21/03/2006

약의 해제를 선언하였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 미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스페인법원에 제기하였다.

스페인의 항소법원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특정한 목적에 위배되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에 상당하다고 하여, 매수인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본 사건에서 쟁점이 된 자동차의 가솔린 감소장치는 매수인이 의뢰한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감소 자체의 기능을 위한 목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이러한 행위들은 매수인이 물품이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나타냄으로 성립 된다. 이로 인하여 매도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물품이 매수인이 특별한 목적에 따른 물품 인도 의무가 부과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은 그러한 사실은 그 방법과 상관없이 통지되면 된다. 또한 그러한 사실이 명확하게 정하면 보다 좋지만 꼭 계약의 내용이 될 필요는 없으며 매도인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불요식의 인지 문제는 사안에 따라 입증책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호주트럭사건⁸⁸⁾에서는 이와 관련해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 매수인과 뉴질랜드 매도인은 트럭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계약경험이 있었고 이러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확립된 관행이었다.

계약당시 트럭은 퀸즈랜드 주법에는 준수해야하는 디자인규정이 있었는데 호주에서 트럭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차량이 제조되었는데 증명서가 붙어있어야 하였고 매매된 트럭에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퀸즈랜드주에서 로드용으로 등록될 수 없었다. 또한 매수인이

88) CLOUT case 1256 : 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 22/07/2011

매도인에게 특별목적에 대한 사전통지 같은 것이 없었다.

상기에 언급한 수입국의 강행법규 판결과 같이 법원은 판결에서 매도인은 수입국의 규제를 고려하여 매매에 임할 필요가 없고 트럭이 특별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거나 알게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매수인은 특별 목적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견본과 일치해야 하는 경우

매수인의 명시적으로 물품의 품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물품과 관련하여 견본을 제공하였다면 CISG 제35조 2항(c)가 적용되어 매도인은 견본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생산되는 물품은 견본이 제공되더라도 완전히 일치될 필요는 없는데, 이탈리아 대리석사건⁸⁹⁾에서는 이탈리아 매도인과 오스트리아 매수인은 대리석을 매매목적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매수인은 대리석 품질과 관련하여 샘플을 매도인에게 견본을 제공하였었는데,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 후에 매수인은 자신이 제공한 견본의 품질과 명세에 일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부하였고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

판결에서는 물품명세를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샘플을 가지고 물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명세를 확실하게 당사자 간에 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인도된 물품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단 인쇄물사건⁹⁰⁾에서도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후

89) UNILEX, Oberlandesgericht Graz, 6R194/95, Austria, 09/11/1995

매수인은 인도된 물품이 제공되었던 샘플과 불일치함을 이유로 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매도인은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견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견본에 일치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불일치의 원인이 사소한 것이라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불일치와 달리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최소한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이탈리아 신발사건⁹¹⁾에서 이탈리아 매도인은 독일 매수인리 견본으로 제공한 신발을 참고하여 신발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에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매도인은 대금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은 견본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그것이 완전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중등품질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여 매수인은 당해분에 관하여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용기 및 포장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

물품에 있어 포장에 필요한 부분을 매수인이 명확히 그 방법에 대해 명시하였다면 CISG 제35조 1항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매도인은 묵시적으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해서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adequate)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또는 포장해야 한다.⁹²⁾ 또한 용기나 포장 자체가 물품의 일부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⁹³⁾ 이때 적절한(adequate)의 포장 범위는 전례 없는 충격 위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90) UNILEX,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05/2945, Belgium, 14/09/2005

91) UNILEX, Landgericht Berlin, 52S247/94, Germany, 15/09/1994

92) CISG 제35조 2항-(d)

93) 최홍섭, 전제논문, p.90.

아닌 당해 통상적으로 동종동류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도의 포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석탄과 광석 같은 Bulk Cargo⁹⁴⁾와 같이 포장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⁹⁵⁾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격 기간에 발생하는 거래로서 운송이 대체로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적절치 못한 포장은 물품의 변형 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포장은 운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적합한 것 이어여야 한다.

포장에 관하여서 독일와인사건⁹⁶⁾에서는 와인제조업자인 이탈리아 매도인은 독일 매수인과 매매목적물을 와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물품을 인수하였으나 부적절한 포장으로 와인병들의 일부분이 깨져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도인 이탈리아 와인 제조업자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 하여 독일 매수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판결에서 매도인은 계약인도조건이 EXW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자신의 계산에 의해 매수인에게 운송을 하였지만 법원의 판단은 포장과 관하여서는 CISG 제35조 2항 (d)호에 따라 매도인은 운송에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와인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매도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매도인의 적절하지 못한 포장은 CISG 제25조에 의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였다.

다른 사건인 호주의 Gun rovings사건⁹⁷⁾에서도 판결에는 매도인은

94) Bulk cargo: 불가산(uncountable), 비포장상태(unpacked)로 거래되는 대량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① 곡물, 석탄, 광석, 유황, 등과 같은 물품 ② 목재, 갯목, 신탄 ③ 선철, 강철 등의 중량화물, ④ 증기기관차, 트랙터등의 특수화물 등이 포함된다.

95)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 228 (d) Packaging

96)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97) UNILEX Summit Chemicals Pty Ltd v Vetrotex Espana SA,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24/05/2004,

“CISG 제35조의 목적에 따라 상업적 품질에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할 묵시적의무가 있고 매매목적물인 섬유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의 행해져야 한다” 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포장조건은 인도가 완성된 이후에도 물품의 보존이나 재판매를 위해서도 적합해야 한다.⁹⁸⁾ 중국 화학약품사건⁹⁹⁾에는 매수인은 화학약품(정밀고순도테레프탈산 : PTA)을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의 검사에서, 물품에 대한 적절한 포장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에서는 CISG 제35조에 의해서 포장이 계약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성들에 대한 특별한 중요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매도인의 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2절 서류교부의무와 본질적 계약위반 사례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할 필요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을 양륙지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하고 별도로 계약에서 따로 약정한 서류가 있다면, 계약에 일치하는 서류를 인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격지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며, 대부분 선물거래로서 과거에 행해졌던 현실적인도 즉, 동시이행거래는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품의 적합성의 여부와 물품의 재판매 등은 서류에 의해 거래가 진행이 된다. 그러므로 서류교부는 소유권

98) 김봉수, 전제논문, p.442.

99)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이전 측면에서 서류는 매도인이 물품을 처분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¹⁰⁰⁾ 계약의 조건으로서 매도인이 교부해야 되는 서류는 물품을 적합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서류와 관련하여 발생이 가능한 분쟁은 보통 크게 ㉠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해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 경우, ㉡ 물품을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과 관련된 종속계약에 관련된 서류의 미교부나 불일치로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 ㉢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CISG 제34와 관련한 사례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상기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총 8개의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하였고, 물품을 인수하기 위해 서류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CISG에서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아 영미법의 사례를 인용하여 사례를 설명하였다. 또한 서류교부와 관련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아 최신사례와 상관없이 모두 활용하고자 하였다.

서류의 사례분석 또한 제3장에서 제4장의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맥락에서 비슷한 판결은 제4장에서 추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표2> CISG 제34조 사례

조항	CISG 제34조 사례
CISG 제34조 : 서류교부의 의무	① UNILEX, Bevaplast BV v. Tetra Médical SA, Gerechtshof's Arnhem, 17/06/1997 ②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③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100) 허은숙, 전제논문, p.780.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Case No. VAS-11307/09, 15/10/2009 ④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⑤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⑥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⑦ COMERCIAL SAN ANTONIO, S.A. vs. GRUPO BLOCNESA, S.L,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12/02/2002 ⑧ [1981] 1 Lloyd's Rep. p.337
--	--

1. 종속계약에 관련된 서류교부의무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매매계약에 포함하는 종속 계약에 의해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서류에 의한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결제 수단으로 대표적인 신용장의 경우 산업용 원재료사건¹⁰¹⁾에서 중국인 매도인과 미국인 매수인은 1988년 4월에 산업용원재료를 매매목적물로 해서 대금결제수단은 신용장으로 하기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은 물품이 선적한 후에 화환취결에 임했으나 신용장상의 문면상의 날짜와 선하증권 상의 날짜가 불일치¹⁰²⁾하여 신용장은 지급거절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선하증권 상의 하자를 수용해 줄 것과 함께 매매계약대금을 지급할 것을 매수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하증권 상의 날짜 불일치를 이유로 하여 매도인에게 물품감액을 요구하였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감액요구를 거절하고 매도인

101)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102) 불일치의 내용 : 매도인의 운송인은 1988년이 아닌 1999년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은 결국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른 회사에게 물품을 재판매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선언하였다.

매수인은 매도인은 하자가 포함된 문서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은행은 신용장에서 지급거절을 하였고 CISG 제34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지급 거절된 해당 문서는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본 협정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수인에게 통지가 없이 이루어진 매도인의 상품 재판매는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 역시 본질적인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만약 그와 같은 문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재판매한다면 선하증권과 신용장상의 날짜 불일치는 추가적인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물품대금감액에 대한 요구는 정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중재 관정부는 모든 경우의 서류상불일치는 계약위반을 구성하지만 본질적 계약위반에는 상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사건인 프루츠 각테일사건¹⁰³⁾에는 멕시코 매수인과 아르헨티나 매도인은 신용장을 결제조건으로 해서 프루츠 각테일과 복숭아의 박스를 매매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멕시코 매수인은 계약매매물품 포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공한 샘플박스에 포장할 것을 지시하였고 물품은 아르헨티나 매도인의 칠레 하도급업자에 의해 선적되었다.

그러나 매수인은 샘플로 제공된 포장박스가 아닌 포장박스로 운송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이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불이행을 주장하였다.

- ㉠ 물품들은 칠레에서 보내졌는데 수입이 멕시코-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103)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 ⑥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는 매수인이 결제한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물품과 계약에서 요구한 일치하는 인보이스를 보내지 않았다.
- ⑦ 물품들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과 수량과 일치 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CISG 제34조에 따라, 아르헨티나 매도인과 칠레 하도급업자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일치하는 서류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아르헨티나 매도인은 칠레 하도급업체를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매도인의 손해배상을 판시하였다.

매수인의 국가에 수입쿼터가 설정이 되어있거나 각종 탄력관세가 부과와 관련하여 이를 배제받기 위해 매도인이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농업용기기 사건¹⁰⁴⁾에서는 덤핑방지관세 적용과 관련해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로서 미국 매수인은 중국 매도인과 농업용기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농업용기기는 미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많이 적용되었었는데, 몇 안 되는 농업용기기 제조회사만 덤핑방지관세가 면제 되었었고 중국매도인 회사는 그들 중 하나였다. 덤핑방지관세 면제와 매도인이 미국에 농업용기기를 수출절차에 대해 정통하다는 매도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미국매수인은 중국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농업용기기를 인수한 뒤 3년 이후에 미국 매수인은 미국세관으로 부터 98.77%의 덤핑방지관세와 미납기간동안의 이자의 통지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도인이 신청과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매수인은 자신이 납부한 관세의 상환을 매수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매도인은 대금상환을 거부함에 따라 미국 매도인은 중국 매수인과의 분쟁에 있어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이 진행되게 되었다.

104)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판정에서는 판정부는 매도인이 덤핑방지관세 미적용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만약 매도인이 절차를 이행할 수 없었더라면 매수인은 수입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매도인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경험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요이유였다. 따라서 중재 판정부는 미국세관에서 요구된 기간 내에 매도인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하여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

2. 물품의 적합성과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선적 전 검사증명서와 같은 물품의 적합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CITES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범이 있는 경우 또는 수입국의 강행법규로 서류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물품의 물적, 법적적합성을 입증을 위해 서류를 교부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가스컴프레셔사건¹⁰⁵⁾에서는 프랑스 매도인과 네덜란드 매수인은 가스컴프레셔를 매매목적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물품을 인도받은 후,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의 제조공정에 대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네덜란드 법령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물품의 대금지급을 거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

판결에서 네덜란드 법원의 판단은 CISG 제34조와 관련해서 매도인의 의무는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며, 매도인은 네덜란드 법률을 준수하여 매도인은 제조과정에 관련한 문서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류의 각국의 원산지가 중요해짐에 따라 원산지의 증명이 계약물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서류교부는 경우에 따라 본질적

105) UNILEX, Bevaplast BV v. Tetra Médical SA, Gerechtshof's Arnhem, 17/06/1997

계약위반을 구성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 사건¹⁰⁶⁾에서는 베네수엘라 매도인과 스페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시작하게 되었는데 계약당사자인 매도인은 매수인에 의해 대금이 지급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하여야하는 매도인 의무와 그리고 특히 물품이 수출되기 위한 꼭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위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러한 문서가 거래조건으로서 기술과 관련된 서류인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러시아 기술장비사건¹⁰⁷⁾에서는 러시아 매수인은 오스트리아 매도인의 국제물품매매 계약위반(기술장비)과 장비비용, 조립, 수수료, 훈련 및 원재료의 보상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당시 매도인은 기술문서 제공과 물품의 인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매수인은 물품공급에 대한 대금지급을 이행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은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기술문서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수인이 공급된 물품의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조립의 착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계약위반을 주장하였다.

법원의 판결에서 “매도인은 공급된 장비의 품질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준비, 조립, 건설, 그리고 작업조건) 조립, 검사, 운송비용, 보증을 위한 직원과견비용을 포함한 자기의비용으로 결점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함으로서 어떠한 결정단점을 치유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법원은 이와 관련된 장비등록문서, 증명서와 인증된 기술문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CISG 제34조를 매도인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CISG 제25조와 계약의 조건에 언급된 바대로 장비

106)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107)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Case No. VAS-11307/09, 15/10/2009

의 조립과 관련된 조건을 준수해야 되는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판단하였다.

3. 물품인수를 위한 서류교부의무

신용장, 추심, 송금 등 다양한 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서류를 통한거래가 필수적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모든 거래는 사실상 서류의 거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주요의무인 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CISG계약에서 물품을 인도 받기위한 서류를 미인도하거나, 인도서류의 불일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은 효과를 내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Comercial san antonio사건¹⁰⁸⁾에서는 스페인매도인과 베네수엘라매수인은 물품매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대로 물품의 결제를 US달러로 하여 선 결제를 하였지만 이후에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통지와 이에 관련한 인도서류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매수인의 여러번의 제촉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자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상환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부터 물품 및 서류교부를 이행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하여 본 사건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으며 매수인은 계약해제와 지급한 대금을 상환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CISG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영미법에서의 Cerealmangimi spa v Toepfer

108) COMERCIAL SAN ANTONIO, S.A. vs. GRUPO BLOCNESA, S.L,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12/02/2002

사건¹⁰⁹⁾에서도 인도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음으로서 계약해제의 요건을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보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서류는 물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때 양륙지 항구에서 제시되어 그때 서류의 상환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물품이 양륙지에 도착하였을 때 매도인은 운송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한달 뒤에 매수인에게 운송서류를 제시가 되었는데, 이미 보리는 해충으로 손상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인도관련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조건의 위반으로서 매수인은 서류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운송서류를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대체서류라고 제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물품의 미인도 이전에 인도서류의 제공의무를 검토함으로 매도인의 서류교부 의무 중 인도서류의 경우는 대부분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충족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09) 민주희, C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47(2), 2014, p.147. (사건재인용) : CISG가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적절한 설명을 위해 삽입, [1981] 1 Lloyd's Rep. p.337 :

제 4 장 유형별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 분석

CISG에서 매수인이 구제수단의 권리로서 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계약해제를 선언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대체품을 청구하는 경우다. 그러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에만 상기의 구제수단이 적용되며,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추가기간지정 등 하자를 보완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행을 선언한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이란 기준은 계약 당사자마다 상이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기준을 살펴보기 위해 사례들을 제3장에서 검토하였다. 다양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의도와 확립된 관습 및 관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계약위반의 유형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박탈의 정도를 가지고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해야 한다.

제 1 절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에 대한 명세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CISG 제35조 1항이 적용되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와 다른 물품을 인도하거나 합의한 바와 차이가 있다면 계약위반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교적 그 책임소제가 명확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의 명세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CISG 제35조 2항에서는 물품은 (a)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b) 매수인의 특별사용목적과 견본에 일치할 것, (c) 견본과 일치할 것, (d) 물품의 적절한 포장이 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3장의 사례들을 통해 유형별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 통상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표3> 통상사용목적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5조 2항 (a)호 : 통상사용목적의 적합성	① 서울중앙지법 2008. 12. 5. 선고 2007가합19698(확정) ② CLOUT case 720 :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5/10/2002 ③ CLOUT case 204 : France Court of Appeal of Grenoble (Commercial Division), 15/05/1996 ④ CLOUT case 272 : 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 Original in German. Unpublished, 31/03/1998 ⑤ CLOUT case 150 : Cour de cassation, Sacovini v. S.A.R.L. Les Fils de Henri Ramel, 23/01/1996 ⑥ CLOUT case 999 : Denmark: Ad hoc Arbitral Tribunal, 10/11/2000 ⑦ CLOUT case 123 : GERMANY Bundesgerichtshof, 8 March 1995, VIII ZR 159/94, 08/03/1995 ⑧ CLOUT case 418 : U.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Louisiana, 17/05/1999 ⑨ UNILEX,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04/06./004 ⑩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물품이 매수인의 특별한 사용목적에 사용될 사실과 견본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CISG 제35조 2항 (a)항이 적용되어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에 적

합하면 품질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본 조항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해가 매수인의 기대가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인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국내 판결¹¹⁰⁾에서는 통상 사용가능한 물품이란 “물품이 다른 동일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사용목적에 합치 한다” 라고해서 통상사용목적성을 판단하고 있고 다른 국외판결¹¹¹⁾에서도 묵시적으로 품질의 적합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영미법계에 따라 물품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대륙법계의 시점에 따라 물품이 중등평균품질의 기준을 가질 것” 의 기준을 제시하여 CSIG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기타 사례들인 독일와인사건¹¹²⁾과 중국 PTA사건¹¹³⁾ 등¹¹⁴⁾에서도 “물품의 시장성이 없다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라고 판단하여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상기의 판례들에서 제시한 판단의 전제는 국제매매거래에서 물품이 사용 및 판매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품질을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 사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물품이 다른 동일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물품이 상품성과 시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의 거래에서 물품을 구입한 매수인은 물품의 국내에

110) 서울중앙지법 2008. 12. 5. 선고 2007가합19698(확정)

111) CLOUT case 720 :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5/10/2002

112)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113)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114) CLOUT case 204 , CLOUT case 272, CLOUT case 150, CLOUT case 999, CLOUT case 123 : 사건들에서도 상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 박탈을 판단하고 있다.

서의 재판매로 추가적인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므로 인도받은 물품 재판매 가능의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물품매매에서 전매는 흔히 발생함으로 이러한 재판매 가능 여부가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품이 매매를 통해 매수인국가로 이동하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재판매가능성 기준은 매수인의 수입지 기준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물품의 수량과 관련해서는 물품의 일부분이 하자가 있는 경우 압력밥솥 사건¹¹⁵⁾에는 매매물품의 하자가 전체 계약의 3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탈리아 신발매매¹¹⁶⁾사건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10%만 계약에 적합하다는 사실은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ISG는 하자가 약 30%이상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과 거래형태를 고려해야 될 것이므로 사실의 문제에 입각해서 본질적 계약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특별한 사용목적의 본질적 계약위반기준

<표4> 특별사용목적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5조 2항 (b)호 : 특별사용목적의 적합성	①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226 (b)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Example 35A ② UNILEX, Schmitz-Werke GmbH & Co. v. Rockland Industr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00-1125, USA, 21/06/2002

115) UNILEX,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04/06./004

116) CLOUT case 867 : Tribunale di Forlì, Mitias v. Solidea S.r.L, 09/12/2008

	③ CLOUT case 734 : Audiencia Provincial de Castellón, sección 3, 21/03/2006 ④ CLOUT case 1256 : 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 22/07/2011 ⑤ CLOUT case 867 : Tribunale di Forlì, Mitias v. Solidea S.r.L, 09/12/2008 ⑥ CLOUT case 905: Tribunal cantonal du canton du Valais, 21/02/2005
--	---

물품이 매수인의 사정에 의한 특별한 사용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물품의 품질을 판단함에 있어서 CISG 제35조 2항 (b)호가 적용된다.

상기 사례들을 통해 특별한 사용목적의 계약위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물품이 매수인의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녹¹¹⁷⁾사건, 드릴사건¹¹⁸⁾과 미국직물사건¹¹⁹⁾에서는 매매된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더라도 매수인이 계산하고 있는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실질적인 기대를 박탈한다고 간주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품을 인도하지 않는 이상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은 매수인의 특별목적에 적합한 물품이 될 수 없으므로 실질적 박탈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물품이 매수인이 요구한 특별한 목적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솔린장치사건¹²⁰⁾과 같이 매수인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 구매된 물품들이 매수인이 기대한 성능을 기대할 수 없다면 매수인이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물품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며, 그러한 물품의 불일치는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계산하였던 매매계약이 후 얻고자하는 이익 달성이 불가

117) CLOUT case 905: Tribunal cantonal du canton du Valais, 21/02/2005

118)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226 (b)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Example 35A

119) UNILEX, Schmitz-Werke GmbH & Co. v. Rockland Industr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00-1125, USA, 21/06/2002

120) CLOUT case 734 : Audiencia Provincial de Castellón, sección 3ª, 21/03/2006

능하게 될 것 이므로 이는 매수인이 기대하고 있던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계약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구입된 목적(the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bought)” 이 고려되어야 한다.¹²¹⁾ CISG는 제8조에서는 당사자의 진술 또는 기타 행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CISG을 해석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특별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조항에서는 매수인이 특별한 사용의 의사표시를 매도인에게 통보하였는지가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매매계약은 불요식성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사표시가 계약의 내용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호주트럭사례¹²²⁾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매수인이 자신의 특별사용목적에 대한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35조 2항(a)가 적용되어 계약위반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특별사용에 대한 의사표시는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그 내용을 계약에서 표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견본매매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표5> 견본매매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5조 2항 (c)호 : 견본매매의	① UNILEX, Oberlandesgericht Graz, 6R194/95, Austria, 09/11/1995 ② UNILEX,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05/2945,

121) 석광현, 전제논문, p.20.

122) CLOUT case 1256 : 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 22/07/2011

적합성	Belgium, 14/09/2005
	③ UNILEX, Landgericht Berlin, 52S247/94, Germany, 15/09/1994
	④ UNILEX,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06/12/1995

매수인이 견본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물품에 대한 명세를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제공된 견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이 명확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리석사건¹²³⁾과 벨기에 전단 인쇄물사건¹²⁴⁾에서는 “견본이 제공된 경우라도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견본과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가 없고 만약 매수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물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합의했어야 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는 실무적으로도 견본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매도인이 정확한 명세도 없이 견본과 완벽한 물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에서 물품의 품질사항을 ‘almost equal’, ‘about equal’, ‘similar equal’로 표시 할 것으로¹²⁵⁾ 권고 하는 실무상 관행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견본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물품의 상품성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박탈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탈리아 신발사건¹²⁶⁾에서 물품이 최소한 중등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공기압축기 사건¹²⁷⁾에서 견본매매를 하였으나 인도된 물품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견본매매에서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견본일치성을 가지고 있지

123) UNILEX, Oberlandesgericht Graz, 6R194/95, Austria, 09/11/1995

124) UNILEX,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05/2945, Belgium, 14/09/2005

125) 양영환, 오원석, 박광서, 전게서, p.115.

126) UNILEX, Landgericht Berlin, 52S247/94, Germany, 15/09/1994

127) UNILEX,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06/12/1995

않다면 실질적 박탈을 구성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된다.

4. 용기 및 포장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표6> 용기 및 포장의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5조 2항 (d)호 : 용기 및 포장의 적합성	①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② UNILEX. Summit Chemicals Pty Ltd v Vetrotex Espana SA,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24/05/2004, ③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국제 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의 이동이 국가 간에 이동을 수반하게 되고 운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대체로 운송하는 기간이 몇 개월씩 소요되는 점을 고려 할 때, 통상적인 포장이란 최소한의 포장을 의미하지만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의 포장은 항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선박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포장되어야 하고 매수인의 항구 도착 이후에 매수인 구내운송을 위한 도로운송이나, 철도운송 등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하자있는 포장은 물품은 장기간 운송에 노출되게 됨으로 물품의 변형이나 손상을 야기하게 되며 매도인의 선적지에서 부적합한 포장은 매수인이 물품 인수 시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포장과 관련한 CISG 제35조에서도 “물품을 보호하는데 통상적,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부절절한 포장하더라도 품질의 이상 없이 인도가 되었

다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포장이 물품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작업임으로 판단되는데 제3장에서 살펴본 독일와인사건¹²⁸⁾과 Gun rovings 사건¹²⁹⁾과 프루츠 칵테일사건¹³⁰⁾에서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포장자체에 대한 계약위반 판단보다는 포장이 되어있는 물품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포장의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고 있고 특히, 중국 화학약품사건¹³¹⁾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전매하고자 하는 특별사용목적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라고”하여 물품의 계약위반이 부적절한 포장에 기인하고 있더라도 포장의 목적물인 물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박탈 여부를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우선 고려대상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포장이 계약위반을 구성하더라도 포장자체로 ‘본질성’을 판단하지 하지 않는 것을 시사하며, 포장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은 물품의 하자 여부에 있기 때문에 CISG 제35조 2항 (a), (b), (c)호에 따라 포장된 물품의 본질적 계약위반 여부를 선행적으로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하자의 원인이 부적절한 포장에 있다면 본질적 계약위반이 확정된다고 판단된다.

제 2 절 서류교부의무과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

제3장 사례분석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계약위반의 유형을 종속계약과 관

128)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129) UNILEX Summit Chemicals Pty Ltd v Vetrotex Espana SA,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24/05/2004,

130)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131)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련한 서류교부, 물품적합성에 관련한 서류교부, 물품인도에 관련한 서류교부의무 구분하였고 2가지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서류의 하자보완 가능성

<표7> 보완이 가능한 서류의 사례

조항	사례
CISG 제34조 : 서류교부의 의무	①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②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③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물품에 대한 계약위반이 아닌 매매계약에 수반하는 종속 계약에 의해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프루츠 각테일사건¹³²⁾과 산업용 원재료사건¹³³⁾에서는 매수인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하자로 인해 계약해제를 선언하였지만 법원은 “서류상의 사소한 하자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 라고 하여 본질적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서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신속하게 송달하여 하자를 보완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업용기기 사건¹³⁴⁾에서도 인도한 물품은 정상이었지만 세금과 관

132)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133)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134)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련한 서류교부의 계약위반은 상대방이 기대하고 있는 실질적 박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한 서류교부의무는 부적합이 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으로도 손해에 대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분석된 사례에서와 같이 서류교부에 관한 계약위반이 하자보완 가능한 것이라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된다.

2. 서류교부의무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

<표8> 물품의 사용과 인도에 관련한 서류사례

조항	CISG 제34조 사례
CISG 제34조 : 서류교부의 의무	① UNILEX, Bevaplast BV v. Tetra Médical SA, Gerechtshof's Arnhem, 17/06/1997 ②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③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Case No. VAS-11307/09, 15/10/2009 ④ COMERCIAL SAN ANTONIO, S.A. vs. GRUPO BLOCNESA, S.L.,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12/02/2002 ⑤ [1981] 1 Lloyd's Rep. p.337

현대 무역거래에서는 물품의 인도, 전매, 통관과 증명 등의 여러 방면에서 서류가 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서류의 교부가 물품과 관련된 의무라면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그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할 필요가 있고 제3장의 사례에서도 서류의 물품의 적합성과 인도로 그 유형을 구분

하였다. 제3장의 사례에서는 물품의 증명과 관련하여 베네수엘라사건¹³⁵⁾과 기술 장비사건¹³⁶⁾에서는 통관필수서류나 물품사용을 위한 서류의 미제공은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가스컴프레셔사건¹³⁷⁾에서도 수입국 강행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이에 일치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였으나 불일치하여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다름없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물품의 인도와 관련하여 Comercial san antonio사건¹³⁸⁾과 Cerealmangimi spa v Toepfer 사건¹³⁹⁾에서는 인도와 관련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적기에 물품을 공급해야하는 매수인이 손해를 봤다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여 계약해제를 인정하였다 .

상기의 사건들의 공통점은 물품의 사용 및 증명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서류였고 또한 이러한 계약위반 사항이 물품과 관련된 서류교부의무라는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례들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구매의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서류교부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은 그 대상물품을 CISG 제35조 2항의 통상적, 특별한 사용목적 기준이 되어서 본질성이 판단되어야하고 그러한 위반 사실원인이 서류제공의무에 있다면 CISG 제34조에 의한 본질적 계약위반이 확정된다고 판단된다.

135)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136)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Case No. VAS-11307/09, 15/10/2009

137) UNILEX, Bevaplast BV v. Tetra Médical SA, Gerechtshof's Arnhem, 17/06/1997

138) COMERCIAL SAN ANTONIO, S.A. vs. GRUPO BLOCNESA, S.L,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12/02/2002

139) [1981] 1 Lloyd's Rep. p.337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CISG에서는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개념은 구제수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 계약위반의 요건인 ‘실질적인 박탈’에 대한 판단기준이 추상적어서 피해당사자의 구제수단 행사에 문제가 되어왔고 이에 CISG의 법적안전성과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증진을 위해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에 대한 요구가 있어왔다.

한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주요의무는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점유권과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하여야 하여야 하며, 가장 많은 불일치가 발생하고 부분이 CISG 제35조의 물품 적합성과 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의무인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이다. 이에 CISG 제35조와 34조를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세운다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간주되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CISG 제35조는 물품적합성 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책임소재가 명백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이 용이한 CISG 제35조 1항보다는, 명세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CISG 제35조 2항을 중심으로 하여 (a), (b), (c), (d)호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을 판단하고자 하였다.

CISG 제35조 2항 (a)호에서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에는 ① 영미법계에 따라 물품의 하자를 인지하고도 동일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 ② 대륙법계의 시점

에 따라 물품이 중등평균품질의 기준을 가질 것, ③ 가격에 합리적인 품질을 가질 것을 기준을 하여 판례들에서는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판단하고 있다.

상기 판례들에서 제시한 판단의 전제는 국제매매거래에서 물품이 사용 및 판매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품질을 충족하여야 하는 최소 사용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물품이 다른 동일한 물품을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품질을 갖추었다는 사실은 물품이 상품성과 시장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재판매를 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을 고려하였을 때, 수입국에서 물품재판매 가능의 여부가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손해의 기준이 되어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량과 관련하여 판례에서는 하자가 약 30%이상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량의 경우에는 사실의 문제에 입각해서 본질적 계약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SIG 제35조 2항 (b)호에서 “특정한 사용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물품이 구입된 목적이 고려되어야 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물품이 계약위반의 유무가 정해짐으로 매수인의 특별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사용목적의 물품은 매수인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수인의 입증책임이 요구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CSIG 제35조 2항 (c)호의 “건본으로 제시된 물품의 품질을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에서는 건본과 물품이 다른 점이 있더라도 그것이 물품의 상품성에 큰 영향이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박탈을 주지 않는 판단되며, 건본매매더라도 중등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 등을 고려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중등품질의 견본일치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 박탈을 준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이 된다고 판단된다.

CISG 제35조 2항 (d)의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기거나 또는 포장되어야 하는 경우”에서 사례들은 포장자체에 대한 계약위반 판단보다는 포장이 되어있는 물품이 계약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있으므로 포장의 판단기준은 CISG 제35조 2항(a), (b), (c)호의 물품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준에 따라 (d)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CISG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의 경우에는 2가지 시사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류교부가 매매계약이나 물품과 관련해서 하자 보완가능성이 있다면 실질적 박탈을 주지 않아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서류교부위반은 보완이 신속하게 가능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손해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아닌 손해배상으로도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서류교부의무가 물품과 관련한 계약위반인 경우에는 포장의 물품 보호 기준에 따라 본질적 계약위반이 정해지는데, 물품이 인도 후에 CISG 제35조 2항(a), (b), (c)호에 따라 제34조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기준이 정해지고 하자의 원인이 서류교부에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의 적용이 확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포장이 물품에 부수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ISG의 목적은 분쟁발생시 각기 다른 법체계에 의한 계약당사자들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고자하는데 계약법에서 통일법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 계약위반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서 피해 당사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판단해서 계약해제를 하고 오히려 위반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와 같이 불확실성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본질적 계약위반을 판단기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제35조와 제34조를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그 기준들은 매수인 국가에서 재판매가 능성, 특별사용목적에 대한 매수인의 의사표시, 중등품질의 일치성, 포장의 물품보호기준, 물품의 사용과 인도에 관련한 서류를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 박탈을 판단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을 확정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었던 제35조 2항 (a), (b)호는 최신 사례와 국내사례를 추가하여 그 법리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c), (d)호와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를 제35조와 관련하여 사례 분석을 실시였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당사자들에게 구제수단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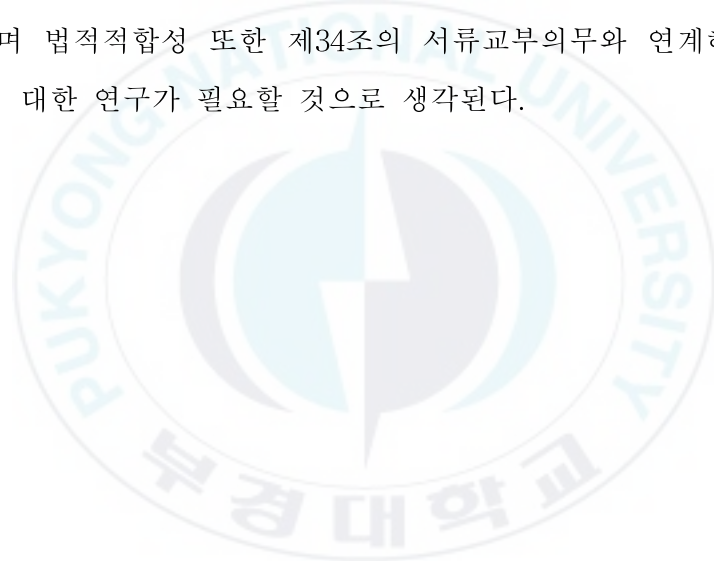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CISG 제35조의 물품 물적 적합의무와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 판단기준을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CISG 제34조와 제35조를 중심으로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그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CISG 제25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의 예외를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 규정을 고려하여 범위를 정하다면 연구범위확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의 범위를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본질적 계약위반에서 면책까지 연구하여 범위를 확정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의 경우 사례가 부족하여 일반화에 대한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CISG제34조가 적용되는 서류교부의무 사례는 상대적으로 제35조에 비해 사례수가 적었고 또한 서류교부의무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완이 상대적으로 쉬워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의 사례가 적어 본질적 계약위반 일반화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물품은 물적 적합성과 법적 적합성으로 구분되는데 물적 적합성에만 범위를 한정하였고 일반적으로 물품은 물적 적합성뿐만 아니라 제3자의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법적적합성까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적합성까지의 연구범위를 확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적적합성 또한 제34조의 서류교부의무와 연계해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단행본 >

윤광운, 무역계약론, 탐북스

양영환, 오원석, 박광서, 무역상무2판, 삼영사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CISG(CISG)의 해석과 적용, 삼영사,

< 국내 연구 >

고승만(20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중대한 계약위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부산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봉수(2014),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의 물품의 계약부적합, 동아법학 (62), 2014, pp. 433-459 (27 pages)

김상만(2011), Incoterms 2010이 적용되는 국제물품 매매거래에서 CISG상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 및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고찰, 通商法律 (International Trade Law), 2011, pp.127-160

김영두(2004), 영미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의 해제, 법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24-144

김화(2013),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64, 2013, pp.561-603 (43 pages)

곽민희(2012), CISG에 있어서 물품의 부적합과 계약해제 - CISG-AC Opinion no.5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21권1호, pp.103-132

도중권(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의 매도인의 하자보완권, 관세학회지, Vol.11 No.2, 2010

- 민주희(2014),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47(2), 2014. 141-158 (18 pages)
- 박남규(2013), 국제품품매매계약상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60권 0호. 2013 pp.3-26
- 석광현(200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3권 2호, pp.437-479
- 석광현(2011),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을 적용한 우리 판결의 소개와 검토, 國際去來法研究 第 20 輯 第 1 號, 2011
- 심종석, 서민교(2008),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계약불이행의 결정기준과 그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CISG, PICC 및 PECL과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3(5), 2008.11, 253-274 (22 pages)
- 이승엽(2015), CISG상 매매목적물의 목적적합성(Fitness for Purpose)에 관한 연구-외국판례 및 중재판정례를 중심으로-, 國際去來法研究 第 24輯 第1號, 2015
- 이천수(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연구: CISG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0, 2010.12, 791-814 (24 pages)
- 오석웅(200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계약책임체계의 특성과 계약위반의 효과: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권을 중심으로, Vol.23 No.3 [2007],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181-206
- 양대천, 조현정, 박성호(2015),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관한비교연구: - CISG, 中國合同法, 한국 민법을 중심으로, 경영경제 제48집 제1호, 2015.5, 67-97 (31 pages)

- 이제우(2015), 해제권의 요건으로서 계약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고려법학, Vol.77 , 2015
- 최홍섭(200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해설, 법무부(2005)
- 최홍섭(20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과 우리법의 비교적 검토, 比較私法, Vol.11 No.3, 2004
- 하강현(2007),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CISG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32권 2호. 2007, pp.399-420
- 하강현(2012),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21권 1호, 2012, pp.79-101
- 하강현(2016), 우리나라 기업의 CISG적용사례에 관한 고찰, 貿易商務研究, Vol.69, 2016
- 허해관(2008), 해상송부매매에서 국제매매협약상 매도인의 서류적합의무에 관한 일고찰 - 선하증권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37권 0호. 2008, pp.61-85
- 허은숙(2011),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양한국>2011권 1호, 2011, pp.153-161
- 홍석모(2011),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에 관한 UN협약해설 및 사례연구
- 허은숙(201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 매도인의 서류 교부의무, 통상정보연구, Vol.13 No.3, 2011
- 한재필(2009), CISG적용 국제물품매매에서 국내 강행법분쟁에 관한 연구: 물품불일치 분쟁사건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19(1), 2009.3,
- 민주희(2014), CIF계약에서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 47(2), 2014. 141-158 (18 pages)

< 국외 연구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edition (1999)

Harry M. Flechtner,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 (“CISG”)”,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 Spring 2008,

< 참조 사례 >

CLOUT case 720 : Nederlands Arbitrage Instituut/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15/10/2002

CLOUT case 204 : France Court of Appeal of Grenoble (Commercial Division), 15/05/1996

CLOUT case 272 : Oberlandesgericht Zweibrücken, Original in German. Unpublished, 31/03/1998

CLOUT case 150 : Cour de cassation, Sacovini v. S.A.R.L. Les Fils de Henri Ramel, 23/01/1996

CLOUT case 999 : Denmark: Ad hoc Arbitral Tribunal, 10/11/2000

CLOUT case 123 : GERMANY Bundesgerichtshof, 8 March 1995, VIII ZR 159/94, 08/03/1995

CLOUT case 418 : U.S. [Federal]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Louisiana, 17/05/1999

CLOUT case 734 : Audiencia Provincial de Castellón, sección 3^a, 21/03/2006

CLOUT case 1256 : Court of Appeal of New Zealand, 22/07/2011

CLOUT case 724 : Oberlandesgericht Koblenz, 2U923/06, 14/12/2006

CLOUT case 977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9/06/2003

CLOUT case 488 : Spain: Provincial Court of Barcelona (Fourteenth Division), 12/02/2002

CLOUT case 1110 : Russian Federation: Judicial Division of the Supreme Arbitration Court of the Russian Federation (VAS), Case No. VAS-11307/09, 15/10/2009

CLOUT case 808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04/06/1999

CLOUT case 1194 : Compromex Arbitration, Conservas La Costeña S.A. de C.V. v. Lanín San Luis S.A. & Agroindustrial Santa Adela S.A, 29/04/1996

CLOUT case 1164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 10/12/2003

CLOUT case 867 : Tribunale di Forlì, Mitias v. Solidea S.r.L, 09/12/2008

CLOUT case 905: Tribunal cantonal du canton du Valais, 21/02/2005

UNILEX, Schmitz-Werke GmbH & Co. v. Rockland Industries Inc, U.S. Court of Appeals, Fourth Circuit, 00-1125, USA, 21/06/2002

UNILEX, Oberlandesgericht Graz, 6R194/95, Austria, 09/11/1995

UNILEX, Rechtbank van Koophandel, Hasselt, AR/05/2945, Belgium, 14/09/2005

UNILEX, Landgericht Berlin, 52S247/94, Germany, 15/09/1994

UNILEX, Summit Chemicals Pty Ltd v Vetrotex Espana SA, Supreme

Court of Western Australia, 24/05/2004,
UNILEX, Bevaplast BV v. Tetra Médical SA, Gerechtshof's Arnhem,
17/06/1997
UNILEX, COMERCIAL SAN ANTONIO, S.A. vs. GRUPO BLOCNESA,
S.L,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12/02/2002
UNILEX,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04/06./004
UNILEX, U.S. Court of Appeals, 2nd Circuit. 06/12/1995
[1981] 1 Lloyd's Rep. 337p
서울중앙지법 2008. 12. 5. 선고 2007가합19698(확정)

<웹사이트>

UNCITRAL : <http://www.uncitral.org/>

UNILEX : <http://www.unilex.info/>